|  |  |  |
| --- | --- | --- |
| **전력 쟁의 및 분쟁 조정규정**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령 제30호《전력 쟁의 및 분쟁 조정규정》이 2011년 9월 20일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주석 吳新雄2011년 9월 30일**제1조** 전력 쟁의 및 분쟁 조정행위를 규율하고 전력 쟁의 및 분쟁 조정제도를 완벽히 하고 전력 쟁의 및 분쟁을 지체 없이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제2조**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출기구(이하 전력감독관리기구라 함)의 전력쟁의 및 분쟁 조정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 전력감독관리기구의 전력 쟁의 및 분쟁 조정은 아래의 원칙을 준용한다.(1) 당사자의 자율, 평등을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한다.(2)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3)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시 하며, 조정으로 인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중재, 사법 등 도경을 통해 자기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저애하지 못한다.**제4조** 당사자는 전력감독관리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력감독관리기구에서도 주동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명확히 거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못한다.**제5조** 당사자가 전력감독관리기구에 조정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1) 신청인은 전력쟁의 및 분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2) 명확한 피신청인이 있어야 한다.(3) 구체적인 조정청구, 사실 및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쟁의 또는 분쟁사항이 전력감독관리기구의 관할에 속해야 한다.**제6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동시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7조** 이 규정 제5조의 조건에 부합되는 조정신청으로서 피신청인이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주동적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는 즉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제8조** 조정신청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수리를 하지 않는다.(1) 피신청인이 명확히 조정을 거절하는 경우(2) 쟁의 또는 분쟁사항과 관련하여 이미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3) 이 규정 제5조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전력감독관리기구가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제9조**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전력 쟁의 및 분쟁을 조정 시에는 쟁의 또는 분쟁의 처리 난이정도와 그 표적의 크고 작음에 따라 1명 또는 1명의 조정요원을 지명하여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제10조** 조정요원은 조정업무를 실시할 때 어느 일방 당사자 편을 들어서는 안 되며, 조정업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도무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조정요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고 전력, 법률, 경제 등 업무지식을 숙지하는 인원이 담당해야 한다.조정요원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제11조** 당사자가 조정요원이 전력 쟁의 및 분쟁과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가 존재하여 공정한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에 조정요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요원 본인이 전력 쟁의 및 분쟁과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가 존재하여 공정한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조정요원의 기피여부는 전력감독관리기구 책임자가 결정한다.**제12조**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수탁인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수임인의 성명, 성별, 나이, 신분증명, 연락방식, 위임기간 및 대리권한을 명기해야 한다.**제13조** 전력 쟁의 및 분쟁이 제3자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제14조** 조정요원은 아래의 방식을 취하여 전력 쟁의 및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1) 이미 장악한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에게 쟁의 분쟁해결 건의를 제기(2) 단독으로 일방 당사자를 만나거나 또는 동시에 각방 당사자를 접견(3) 서면이나 구두 방식으로 일방 당사자 또는 각방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4) 당사자에게 쟁의분쟁 해결건의 또는 방안을 제기하도록 요구(5)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쟁의분쟁 각방과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나 기구에 의뢰하여 쟁의 분쟁사항에 대한 자문건의 또는 감정의견을 청취 (6) 당사자의 일치한 의견달성에 유리한 기타 방식.**제15조** 조정 중에서 당사자는 여실하게 사실을 진술하고 조정 질서를 준수하고 조정요원과 상대방 당사자를 존중해야 한다.**제16조** 조정 중에서 당사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조정을 종료한다.(1)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2) 고의로 시간을 지연한 경우(3) 정당한 이유 없이 궐석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조정 탈퇴의사를 보여준 경우(4) 전력쟁의 및 분쟁 사항과 관련하여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5) 조정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주는 기타 상황.**제17조** 조정결과가 제3자의 이익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료한다.**제18조** 조정은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종결지어야 한다. 사정이 복잡하여 규정한 기한 내에 종결을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제19조** 조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료해야 한다.**제20조** 조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한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1) 당사자의 기본상황(2) 전력 쟁의 및 분쟁의 주요사실, 분쟁사항 및 각방 당사자의 책임(3) 당사자가 달성한 조정합의서의 내용, 이행방식과 기한.조정서에는 조정요원과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전력감독관리기구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조정서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제21조** 당사자는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 조정서 중에 민사권리 의무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계약의 성격을 구비하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민사 권리의무 내용이 있는 조정서인 경우,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그 효력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조종서에 지급내용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의 규정에 따라 공증기관에 강제집행효력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강제 집행효력을 구비하는 공증문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제23조** 조정서에 지급내용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지급 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24조** 조정에 참여한 인원은 법에 따라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비밀을 고수해야 한다.**제25조**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전력 쟁의 및 분쟁을 조정 시에는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않는다.**제26조** 발전소의 송전망 접속 또는 송전망과 송전망 지간의 연결에 있어서 접속 또는 연결 쌍방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여 발생한 쟁의나 분쟁은 《송전망 접속 연결 쟁의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27조**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3월 28일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가 반포한 《전력 쟁의 및 분쟁 조정 잠정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电力争议纠纷调解规定**国家电力监管委员会令第30号　　《电力争议纠纷调解规定》已经2011年9月20日国家电力监管委员会主席办公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1月1日起施行。　　　　　　　　　　　　　　　　　　　　　　 　　 主席 　吴新雄　　　　　　　　　　　　　　　　　　　　 　　二○一一年九月三十日　　**第一条** 为了规范电力争议纠纷调解行为，完善电力争议纠纷调解制度，及时解决电力争议纠纷，根据国家有关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国家电力监管委员会及其派出机构（以下简称电力监管机构）调解电力争议纠纷，适用本规定。　　**第三条** 电力监管机构调解电力争议纠纷，遵循下列原则：　　（一）在当事人自愿、平等基础上进行调解；　　（二）不违背法律、行政法规和国家政策，公平合理；　　（三）尊重当事人的权利，不得因调解而阻止当事人依法通过仲裁、司法等途径维护自己的权利。　　**第四条** 当事人可以向电力监管机构申请调解，电力监管机构也可以主动调解。当事人一方明确拒绝调解的，不得调解。　　**第五条** 当事人向电力监管机构申请调解，应当符合下列条件：　　（一）申请人与电力争议纠纷有直接利害关系；　　（二）有明确的被申请人；　　（三）有具体的调解请求、事实和理由；　　（四）争议纠纷事项属于电力监管机构管辖。　　**第六条** 电力监管机构收到调解申请后，应当在七日内决定是否受理并且通知当事人。　　**第七条** 符合本规定第五条规定条件的调解申请，被申请人同意调解的，电力监管机构应当受理。电力监管机构主动调解的，双方当事人同意即为受理。　　**第八条** 调解申请有下列情形之一的，电力监管机构不予受理：　　（一）被申请人明确拒绝调解的；　　（二）已经就争议纠纷事项提起仲裁或者诉讼的；　　（三）不符合本规定第五条规定条件的。　　电力监管机构决定不予受理的，应当向当事人说明理由。　　**第九条** 电力监管机构调解电力争议纠纷，应当根据争议纠纷复杂程度和争议纠纷标的大小，指定一名或者三名调解员进行调解。　　**第十条** 调解员进行调解工作，不得偏袒一方当事人，不得利用调解工作的便利牟取不正当利益，不得泄露当事人的商业秘密和个人隐私。　　调解员应当由公道正派、熟悉电力、法律、经济等业务知识的人员担任。　　调解员的具体管理办法另行规定。　　**第十一条** 当事人认为调解员与电力争议纠纷有利害关系或者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调解的，可以向电力监管机构申请调解员回避。调解员认为自己与电力争议纠纷有利害关系或者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调解的，应当自行申请回避。　　调解员是否回避，由电力监管机构负责人决定。　　**第十二条** 当事人可以委托代理人参加调解。委托代理人代理的，被委托人应当提交授权委托书。授权委托书应当由委托人签名或者盖章，载明委托代理人姓名、性别、年龄、身份证明、联系方式、委托期限和代理权限。　　**第十三条** 电力争议纠纷涉及第三人的，应当通知第三人参加。　　**第十四条** 调解员可以采取下列方式调解电力争议纠纷：　　（一）根据已掌握的情况向当事人提出争议纠纷解决建议；　　（二）单独会见一方当事人或者同时会见各方当事人；　　（三）以书面或者口头方式征求一方当事人或者各方当事人的意见；　　（四）要求当事人提出争议纠纷解决建议或者方案；　　（五）经当事人同意，聘请与争议纠纷各方无利害关系的专家或者机构对争议纠纷事项提供咨询建议或者鉴定意见；　　（六）有利于当事人达成一致的其他方式。　　**第十五条** 调解过程中，当事人应当如实陈述事实，遵守调解秩序，尊重调解员和对方当事人。　　**第十六条** 调解过程中，当事人有下列情形之一的，电力监管机构可以终止调解：　　（一）隐瞒重要事实、提供虚假情况的；　　（二）故意拖延时间的；　　（三）无正当理由缺席或者以其他方式表明退出调解的；　　（四）就电力争议纠纷事项提起仲裁或者诉讼的；　　（五）影响调解正常进行的其他情况。　　**第十七条** 调解结果涉及第三人利益的，应当征得第三人同意。第三人不同意的，终止调解。　　**第十八条** 调解应当自受理之日起三个月内结案。因情况复杂，在规定时间内不能结案的，可以适当延长，但最长不超过六个月。　　**第十九条** 调解达不成协议的，终止调解。　　**第二十条** 调解达成协议的，电力监管机构可以制作调解书。调解书可以载明下列事项：　　（一）当事人的基本情况；　　（二）电力争议纠纷的主要事实、争议纠纷事项以及各方当事人的责任；　　（三）当事人达成调解协议的内容，履行的方式、期限。　　调解书应当由调解员以及当事人签名或者盖章，并且加盖电力监管机构印章。电力监管机构应当将调解书及时送达当事人。　　**第二十一条** 当事人应当履行调解书。调解书中有关民事权利义务的内容，具有民事合同的性质，法律另有规定的除外。　　具有民事权利义务内容的调解书，当事人可以申请有管辖权的人民法院确认其效力。　　**第二十二条** 具有给付内容的调解书，当事人可以按照《中华人民共和国公证法》的规定申请公证机关依法赋予强制执行效力。债务人不履行或者不适当履行具有强制执行效力的公证文书的，债权人可以依法向有管辖权的人民法院申请执行。　　**第二十三条** 具有给付内容的调解书，债权人可以依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向有管辖权的人民法院申请支付令。　**第二十四条** 参与调解的人员应当依法保守在调解过程中获知的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信息。　　**第二十五条** 电力监管机构调解电力争议纠纷不收取任何费用。　　**第二十六条** 发电厂与电网并网、电网与电网互联，并网双方或者互联双方达不成协议引起的争议纠纷，依照《电力并网互联争议处理规定》处理。　　**第二十七条** 本规定自2012年1月1日起施行。2005年3月28日国家电力监管委员会发布的《电力争议调解暂行办法》同时废止。 |